

코로나 관련 지식IN Q&A

☐ 고용유지지원금 관련

<1> 코로나19로 경기가 최악의 상황입니다. 직원을 해고하지 않고 유지하고 싶은데 지원하는 제도가 있나요?

☐ 네이버 지식 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.

☐ 고용유지지원금제도가 있습니다.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으로 직원을 계속 고용하기 어려워졌음에도 휴업, 휴직 등을 통해 직원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사업주에 대해 정부가 인건비를 일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
○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 중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를 지원합니다.

<2> 코로나19와 관련하여 회사 경영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. 얼마전 보도에서 들었는데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한다고 들었습니다. 업종에 제한이 있나요?

☐ 네이버 지식 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.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우, 업종에 관계없이 지원하고 있습니다.

<3> '20.3.1.부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을 일시적(6개월)으로 높였다고 하는데 코로나 19와 관련이 있는건가요?

☐ 네, 그렇습니다.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여 고용유지조치(휴업·휴직)를 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

☐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기업의 어려움이 지속되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,

○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사업주의 부담을 완화해 달라는 의견이 많은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을 일시적으로 상향하게 되었습니다.

<4> 코로나19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일시적으로 높였다고 하는데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요?

☐ 네이버 지식 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.

☐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일시적(6개월)으로 상향됩니다.

○ 노동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3/4까지 지원합니다. 이 경우, 월급이 200만원인 노동자를 기준으로 사업주 부담분은 12만원 줄어든게 됩니다.

* 지원비율: ▲우선지원대상기업: (현재) 2/3→(변경) 3/4 ▲대규모기업: (현재) 1/2→(변경) 2/3

< 지원비율 상향 시 노동자 1인당 지원금액 변화 예시 >

사 례	구 분	현 행	지원비율 상향 시(2/3→3/4)
월급 200만원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	휴업수당(A)	140만원	140만원
	고용유지지원금(B)	93만원	105만원 (+12만원)
	기업부담분(A-B)	47만원	35만원 (-12만원)

<5> 코로나 19로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액은 코로나 피해기업만 받을 수 있나요?

☐ 네이버 지식 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.

☐ 그렇지 않습니다. ①'20.2.1.~7.31.(6개월) 동안 ②고용유지조치(휴업 또는 휴직)를 하고 휴업·휴직 수당을 지급한 모든 사업주는 3월부터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

<6> 기존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받고 있던 사업주(예: '20.1.1. 고용

유지조치 실시)에게도 코로나19관련 상향된 지원 금액이 지원되는 것인가요?

- ☐ 네이버 지식 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.
- ☐ 실제 고용유지조치가 '20.2.1. 이전 또는 '20.7.31.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는 해당되지 않습니다.
- ☐ 다만, '20.2.1. 이전부터 계속적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등* 1달이라도 지원 기간(6개월)에 포함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에 한해 상향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
※ 사례1 ○ 고용유지조치를 '19.12.1.~'20.3.31.까지 실시한 경우 ⇒ '19.12.1.~'20.1.31.(2개월) : 2/3 지원 ⇒ '20.2.1.~'20.3.31.(2개월) : 3/4 지원	※ 사례2 ○ 고용유지조치를 '20.6.1.~'20.9.30.까지 실시한 경우 ⇒ '20.6.1.~'20.7.31.(2개월) : 3/4 지원 ⇒ '20.8.1.~'20.9.30.(2개월) : 2/3 지원
--	--

< 고용유지조치 실시 기간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예시 >

* (가정) 월급 200만원, 휴업수당 140만원인 노동자 : 지원금 상향 지원

구 분	고용유지조치 기간 / 지원 금액			
	'19.12월	'20.1월	'20.2월	'20.3월
(사례 1) 고용유지조치 기간이 '19.12.1.~'20.3.31.	93만원	93만원	105만원	105만원
(사례 2) 고용유지조치 기간이 '20.6.1.~'20.9.31.	'20.6월 105만원	'20.7월 105만원	'20.8월 93만원	'20.9월 93만원

<7>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우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이 늘어나는 건가요?

- ☐ 네이버 지식 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.
- ☐ 전체 지원 기간은 늘어나지 않습니다. 이번 고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금액이 상향되는 기간을 정한 것 뿐이며,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은 180일로 동일합니다.

<8>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우, 1일 지원금액 상한액

(66,000원)도 높아지는 건가요?

- ☐ 네이버 지식 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.
- 1일 노동자 1명에 대한 평균 지원금액(42,469원),* 상한액 지급비율(전체의 13%)을 감안하여, 1일 최대 지원금액(66,000원, 월 30일 기준 198만원)은 변경하지 않았습니다.

* '19년 유급휴직 사업장에 지급된 1일 평균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액

< 지원비율 상향 시 노동자 1인당 지원금액 변화 예시: 월 30일 기준 >

사 례	구 분	현 행	지원비율 상향 시(2/3→3/4)
월급 424만원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노동자	휴업수당(A)	297만원	297만원
	고용유지지원금(B)	198만원	198만원 (동일)
	기업부담분(A-B)	99만원	99만원 (동일)

□ 가족돌봄휴가

<1> 코로나19로 어린이집이 휴원했습니다. 아이를 돌볼 사람이 없어 휴가를 내야 하는데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가 있나요?

□ 네이버 지식 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.

- 네. 가족돌봄휴가가 있습니다.

□ 코로나19 확진자 및 의사환자 돌봄, 또는 어린이집, 유치원, 학교의 휴업 및 개학연기 등으로 자녀의 긴급한 가정돌봄이 필요하여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

- 1인당 일 5만원(부부 합산 최대 50만원)을 5일 이내(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0일 이내)기간동안 지원하게 될 예정이며 코로나 상황 종료 시까지 한정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.

<2> 가족돌봄휴가는 원래 무급인 것으로 아는데요, 코로나19와 관련있으면, 무급에서 유급으로 전환되는 건가요?

□ 네이버 지식 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.

- 가족돌봄휴가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에 규정된 제도로 무급휴가입니다.
-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긴급하게 가족 돌봄이 필요한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것으로,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전환하는 것은 아닙니다.

<3> 코로나19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해야 하는데, 사업주가 휴가 부여를 거부합니다.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□ 안녕하세요, 네이버 지식 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.

-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보육시설·유치원·학교의 휴원·개학연기시

에 자녀의 긴급한 가정보호를 위해 근로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경우, 사업주는 반드시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.

- 이를 거부하는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.
-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거부하는 제보나 문의가 접수될 경우에는 사업장에 대해 휴가를 부여하도록 적극 지도하고, 미부여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을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.

<4> 저는 공무원인데요, 코로나19관련 공무원도 가족돌봄휴가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
□ 안녕하세요, 네이버 지식 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.

- 공무원은 「국가공무원 복무규정」과 「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」에 따라 유급 가족돌봄휴가(2일, 2자녀 이상은 3일)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 대상은 아닙니다.
- 앞으로도, 코로나19 진행 추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공무원의 자녀돌봄에 부족함이 없는지 계속 살피겠습니다.

<5> 저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발표 이전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는데요, 코로나19 관련성이 있으면, 저도 가족돌봄휴가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
□ 안녕하세요, 네이버 지식 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.

- 국내 첫 번째 코로나19 확진판정일(‘20.1.20) 이후 코로나19 상황 종료시까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셨다면,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<6>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 방법이 궁금합니다.

□ 안녕하세요, 네이버 지식 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.

- 3월 16일 이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도록 준비중입니다.
- 전산시스템 개발 등에 시간이 소요되어 당장 신청이 어려운 점 양해 바랍니다.

<7>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는 맞벌이 부부에게만 지원되나요?

- ☐ 안녕하세요, 네이버 지식 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.
- 근로자 1인당 최대 5일간 지원하고 있습니다. 따라서 외벌이 근로자의 경우 5일, 맞벌이 근로자의 경우, 부부 각 5일씩 10일까지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다만, 한부모 근로자의 경우 10일까지 지원할 예정입니다.

<8> 이번 코로나 19와 관련해서 자녀의 연령에 관계없이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나요?

- ☐ 안녕하세요, 네이버 지식 파트너 고용노동부입니다.
-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녀의 연령이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(근로자에게 유리한 기준으로 적용)인 경우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